

[] 개업

과세물품제조업

[] 변경

[] 폐업

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 즉시	
납 세 의무자	성 명(대 표 자)			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	
	상 호(법인명)			전화번호	
	주 소(본점소재지)				
	제 조 장 의 소재 지				
신고내용	과세 대상	종 류			
		품 명			
		개 · 폐 업 연월일	년	월	일
	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 여부		[] 여 , [] 부		

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사업인·허가증 사본 1부 (법령에 따른 인·허가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)	수수료 없 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주민등록표초본(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 합니다)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
 사항 중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

1	상호	사업장 소재지	개설·폐업일	비고
2	상호	사업장 소재지	개설·폐업일	비고
3	상호	사업장 소재지	개설·폐업일	비고
4	상호	사업장 소재지	개설·폐업일	비고
5	상호	사업장 소재지	개설·폐업일	비고
6	상호	사업장 소재지	개설·폐업일	비고
7	상호	사업장 소재지	개설·폐업일	비고
8	상호	사업장 소재지	개설·폐업일	비고

작성방법

1. 사업자단위 과세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된 사업장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.
2. 종된 사업장을 개설(휴업 후 영업재개) 또는 폐업(휴업)하는 경우에는 개설일(영업재개일) 또는 폐업일(휴업일)을 적으시고, 비고란에 개설(영업재개) 또는 폐업(휴업)이라고 적습니다.
3. 종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사업장은 폐업으로, 이전 후 사업장은 개설로 하여 각각 신고합니다.